

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

제정 2014. 7. 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4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(8)(이하 “전문엔젤투자자”라고 한다)에 관하여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문엔젤투자자 투자실적) 영 제2조의3제3항제1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.

제3조(전문엔젤투자자 경력 등) ① 영 제2조의3제3항제2호바목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전문엔젤투자자 양성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.

②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중소기업청은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한다.

1. 강의 시간,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내용, 다만 총 강의 시간은 50시간 이상 일 것
2.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, 다만 교육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60%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
3. 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방식(주중, 주간 등 일자별 시간표 등)

③ 영 제2조의3제3항제2호바목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

제4조 (전문엔젤투자자 확인의 신청 등) 영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엔젤투자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개인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은 한국벤처투자(주)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[별지 제2호 서식]
3. 투자확인서[별지 제3호 서식]
4. 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, 제출용)
5. 주주명부(신청자 등재분)
6. 이외, 자격증 사본, 학위증 사본, 경력증명서, 투자계약서 사본 등 그 밖의 투자실적 및 경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

제5조(서류 접수 및 결과의 통보) ① 한국벤처투자(주)의 대표는 자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가 영 제2조의3제3항으로 정한 투자실적 및 경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한국벤처투자(주)의 대표는 신청인이 전문엔젤투자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, 중소기업청장은 서류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[별지 3호 서식]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한국벤처투자(주)의 대표는 전문엔젤투자자의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유효기간 산정) ① 영 제2조의3제4항으로 정한 제출자료의 유효기간이라 함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기존에 전문엔젤투자자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일전 1개월에서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2년으로 한다.

② 전문엔젤투자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, 영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 만료되며, 이 경우 한국벤처투자(주)의 대표는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7조(서류제출 방법 등) ①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한국벤처투자(주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동일한 방법으로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서 한국벤처투자(주)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 다만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 제출된 경우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출된 서류를 지체 없이 한국벤처투자(주)에 접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세부지침의 제정) 한국벤처투자(주)의 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9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14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관리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호 서식]

전문엔젤투자자 확인신청서

신청자	성명		생년월일	년 월 일	성별	남, 여
	주소	① (-)		전화번호	③	
	이메일주소	④		팩스번호	⑤	

투자실적 (최근 3년 이내 창업자 등의 신주를 1년 이상 보유했거나 보유중인 투자실적)

① 피투자 기업명	② 투자기간		③ 주식수	④ 투자금액 (원)	⑤ 지분율
	취득일자 ~ 회수일자	기간			
	~				
	~				
	~				
	~				
계					

경력 (상장기업의 전현직 창업자 및 임원 경력, 창투사 등의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 등)

① 소속기관	② 재직기간(또는 심사기간)		③ 최종직위	④ 담당업무	⑤ 비고
	시작일자 ~ 종료일자	기간			
	~				
	~				
	~				
	~				
계					

기타 :

(자격증, 박사학위, 또는 교육과정명 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기타 자격)

위와 같이 투자실적 및 경력사항을 정히 확인하여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확인자

(서명 또는 인)

한국벤처투자(주) 대표이사 귀하
첨부서류

- ① 투자확인서 등의 서류
- ② 자격증 사본, 박사학위증 사본,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등의 서류
-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한국벤처투자(주)는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, 그리고 투자실적 보고 업무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3조제1호, 제24조제1항제1호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, 제33조,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대상

- 전문엔젤투자자로 확인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인 및 투자실적을 보고하는 전문엔젤투자자

수집·이용 목적

-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 업무
- 전문엔젤투자자가 보고하는 투자실적 접수 업무

수집·이용할 항목

필수항목

- 전문엔젤투자자로 확인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인의 생년월일 및 개인정보항목(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핸드폰 번호, 이메일 주소), 경력, 투자이력사항 등
- 투자실적을 보고하는 전문엔젤투자자의 생년월일 및 개인정보항목(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핸드폰 번호, 이메일 주소), 경력, 투자실적 이력사항 등

선택항목

- 전문엔젤투자자의 팩스번호, 근무처명 등

보유·이용기간

- 위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- 단,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. (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위 개인(신용)정보 중 필수항목,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항목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및 투자실적 확인과 관련된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?

개인정보	필수항목 : 생년월일, 개인정보항목, 경 력, 투자이력사항	(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)
	선택항목 : 근무처명, 팩스번호 등	(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)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 :

동의자 성명 :

서명 또는 인

[별지 제3호 서식]

투 자 확 인 서

투 자 자	성 명		생년월일	년 월 일	성별	남, 여
	주 소		⑥	전화번호	⑦	
투 자 기 업	법인명(상호)		법인등록번호	-		
			사업자등록 번호	-	-	
	대표자(성명)		전화번호			
	설 립 일		자 본 금			
	총발행주식수		액 면 가		업 종	
	소재지(주소)					

투 자 명 세 표

① 보유기간		② 주식수	③ 투자금액 (원)	④ 지분율	⑤ 비고
투자일자~ 회수일자	기간				
계					

위와 같이 투자내역을 정히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확인자 (주)

대표이사

(서명 또는 인)

한국벤처투자(주) 대표이사 귀하

첨부서류

- ① 투자계약서 사본
- ②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, 제출용)
- ③ 주주명부(투자자 등재분)

투자명세 작성요령

- ① 보유기간 작성(동일 회사 주식이나 보유기간이 다르거나, 주식의 종류가 다른 경우 각각 따로 작성)
 - ② 인수한 주식수 기재
 - ③ 투자금액 기재
 - ④ 지분율 = 투자 주식수 ÷ 총발행주수 × 100
 - ⑤ 비고 : 주식의 종류(보통주, 우선주) 기재
* 투자금액은 인수할 당시 인수대금으로 작성
- ※ 작성대상 : 창업자,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으로 인수 후 1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한함

투 자 명 세

① 보유기간		② 주식수	③ 투자금액 (원)	④ 지분율	⑤ 비고
투자일자~ 회수일자	기간				
2010.11.10~2011.12.10	1년1개월	1,000	10,000,000		보통주
2011.09.08~2013.12.08	2년3개월	2,000	10,000,000		우선주
계		3,000			

제 호

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유효기간 :

상기인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 제1항제2호가목(8) 규정에 의하여 전문엔젤투자자의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중소기업청장 인

210mm×297mm(특수용지 110g/m²)